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관광 확대를 위한 인력 2명(6급 2명),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국제선박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수산물 소비·유통 담당 인력 1명(6급 1명),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총괄 인력 1명(4·5급 1명), 감사수요 대응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업무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원산지 단속 고도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2년간 운영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2명(5급 2명)을 정규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정책실에서 수행하던 어선안전조업 상황실 운영 업무를 이관하여 해사안전국에서 상황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도록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수산식품 성분분석 인력 1명(연구사 1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인력 3명(연구사 3명), 수산자원 평가인력 1명(연구사 1명), 고래류 자원조사 평가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 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5항제4호 중 “연근해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어선안전조업상황실 운영 및 어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연근해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및 어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상재해·해양사고 상황처리 및 종합상황실 관리 및 운영

제41조제2항 중 “어업교섭을 담당하는 2명(5급 2명)과 홍보를 담당하는 1명(4·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를 “어업교섭을 담당하는 2명(5급 2명), 홍보를 담당하는 1명(4·5급 1명) 및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제5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 8항 6항으로 당겨야하는 것 아닌

지. 맞다면 별표 31도 수정필요

별표 16 중 총계 “582”를 “592”로 하고, 일반직 계 “578”을 “588”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49”를 “5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93”을 “196”으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0”을 “206”으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585”를 “595”로 하고, 일반직 계 “581”을 “591”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48”을 “49”로 하고,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01”을 “204”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94”를 “200”으로 한다.

별표 18 중 총계 “291”을 “29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89”를 각각 “29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74”를 “75”로 한다.

별표 18의2 중 총계 “292”를 “29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90”을 각각 “291”로 하며, 행정주사
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73”을
“74”로 한다.

별표 24 중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
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05”를 “106”
으로 하고, 건축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25 중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
경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05”를 “106”
으로 하고, 건축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27 중 총계 “614”를 “62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612”를 각각 “6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
하 “605”를 “612”로 한다.

별표 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1명(4급 1명)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의 존속기한 도래에 관한 경과조치) 제45
조의2의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의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별표 30 제
2호의 정원 5명 중 1명(4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6조 관련)

1. 제46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2. 삭제 <2020. 3. 31.>

3. 제46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

4. 제46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5. 제46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6. 삭제 <2021. 3. 2.>

7. 삭제 <2021. 3. 2.>

8. 제46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⑭ (생략)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어선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연근해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어선안전조업상황실 운영 및 어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u>	4. <u>연근해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및 어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u>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⑯ ~ ⑳ (생략)	⑯ ~ ⑳ (현행과 같음)
제10조(해사안전국) ① ~ ④ (생략)	제10조(해사안전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사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해상재해 · 해양사고 상황처리 및 해양항만상황관리실 운영</u>	3. <u>종합상황실 관리 및 운영</u>
4. ~ 16. (생략)	4. ~ 16.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어업교섭을 담당하는 2</u>	② ----- ----- <u>어업교섭을 담당하는 2</u>

명(5급 2명)과 홍보를 담당하는 1명(4·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제46조(한시정원) ① ~ ④ (생략)

⑤ 조선·해운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두며, 별표 31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명(5급 2명), 홍보를 담당하는 1명(4·5급 1명) 및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한시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2023년 2월 28일 -----

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⑥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두며, 별표 31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⑦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오염방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두며, 별표 31의 정원 1명(해양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⑧ (생략)

<삭제>

<삭제>

⑧ (현행과 같음)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82	592	+10
일반직 계	578	588	+10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49	50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93	196	+3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 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 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u>200</u>	<u>206</u>	+6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85</u>	<u>595</u>	+10
일반직 계	<u>581</u>	<u>591</u>	+10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 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48</u>	<u>49</u>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 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u>201</u>	<u>204</u>	+3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 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 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u>194</u>	<u>200</u>	+6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91</u>	<u>292</u>	+1
1. 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89</u>	<u>290</u>	+1
일반직 계	<u>289</u>	<u>290</u>	+1
·	·	·	
·	·	·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u>74</u>	<u>75</u>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92</u>	<u>293</u>	+1
1. 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90</u>	<u>291</u>	+1
일반직 계	<u>290</u>	<u>291</u>	+1
·	·	·	
·	·	·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u>73</u>	<u>74</u>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 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 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 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u>105</u>	<u>106</u>	+1
·	·	·	
·	·	·	
건축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 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 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 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u>105</u>	<u>106</u>	+1
·	·	·	
·	·	·	
건축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7]

국립수산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14</u>	<u>621</u>	+7
1. 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612</u>	<u>619</u>	+7
일반직 계	<u>612</u>	<u>619</u>	+7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05</u>	<u>612</u>	+7
·	·	·	
·	·	·	